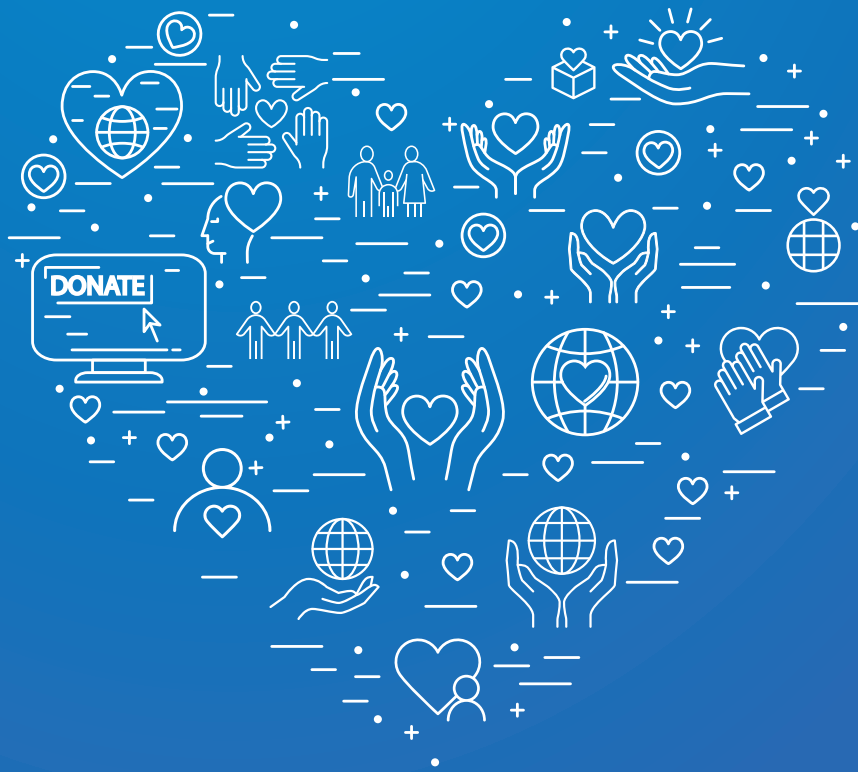


유산기부 가이드라인





당신의 유산, 어떻게 나누면 좋을까요?

먼저 배우자를 위해,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
유산을 남겨주세요

고마운 누군가 있다면 또 남기고
그리고 마지막엔,
더불어 살아갈 또 다른 이웃들을 위해
남겨주세요

| | |
|--|--|
| <p>01 유산기부 설명</p> | <p>유산기부 정의 유산기부 필요성 기부 절차 기부 재산의 평가 기부가 제한되는 경우</p> |
| <p>02 유산기부에 관한 편견</p> | <p>유산기부는 재산이 많은 사람만 가능한가요? 유산기부는 절차가 복잡하지 않나요? 유산기부를 하게 되면 세금을 많이 내야 하지 않나요? 가족이 있는데도 내 재산을 모두 유산기부 할 수 있나요? 내가 기부한 유산은 어디 쓰이는지 궁금합니다.</p> |
| <p>03 유산기부 동참하는 사람들</p> | <p>각 단체 유산기부 동참하는 사람들 사례</p> |
| <p>04 유산기부 3가지 방법</p> | <p>유연 공증에 의한 유산기부(현금, 부동산, 주식, 보험 등) 유연대용신탁에 의한 유산기부 종신·생명보험에 의한 유산기부</p> |
| <p>05 유연공증에 의한 유산기부 (현금, 부동산, 주식, 보험 등)</p> | <p>유연 공증에 의한 유산기부 의미 유연 공증에 의한 유산기부 절차 유연 공증에 의한 유산기부 준비사항 유연 공증에 의한 유산기부 Q&A ① 유연방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②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알고 있는데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장 작성 시 유의해야 할 점이 있나요? ③ 유연 공증 증인의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나요?</p> |
| <p>06 유연대용신탁에 의한 유산기부</p> | <p>유연대용신탁에 의한 유산기부 의미 유연대용신탁과 유언에 의한 신탁의 구별 유연대용신탁에 의한 기부의 장 단점 유연대용신탁에 의한 유산기부 절차 유연대용신탁에 의한 유산기부 Q&A ① 신탁에 의한 유산기부를 진행할 시 생전에 나오는 자산의 수익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② 신탁에 의한 유산기부만의 장점이 있나요?</p> |
| <p>07 종신·생명보험에 의한 유산기부</p> | <p>종신·생명보험에 의한 유산기부 의미 종신·생명보험에 의한 유산기부 절차 종신·생명보험에 의한 유산기부 Q&A ① 보험금 수익자를 기부 하고자 하는 단체로 하면 보험료에 대한 기부금 특별공제는 가능한가요? ② 종신 생명보험의 수익자를 기부 하고자 하는 단체 이외에 가족도 동시에 지정할 수 있나요?</p> |
| <p>08 자주 묻는 질문(FAQ)</p> | <p>① 현금 이외에 부동산도 기부할 수 있나요? ② 유산기부가 현행법에 의해 제한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③ 내가 기부한 유산은 어떤 사업에 쓰이나요? ④ 보험금 수익자를 기부 하고자 하는 단체로 하면 보험료에 대한 기부금 특별공제는 가능한가요? ⑤ 유산기부를 할 때 가족이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⑥ 공익법인에 기부 시 세금 부과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⑦ 상속받은 재산을 유산 기부하려고 하는데 상속등기가 꼭 필요한가요? ⑧ 유산기부를 할 때 가족이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p> |
| <p>09 각 단체 소개</p> | <p>각 단체 소개 및 활동내역</p> |

유산기부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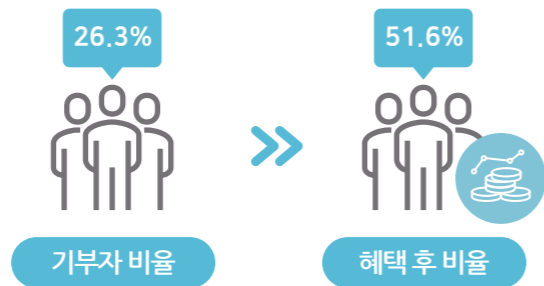
정의

기부자가 「자신의 사후(死後)에 남겨질 재산」인 유산(遺産)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언자와 관계없는 공익단체 등 제3자에게 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불우한 이웃이나 친척 등에게 유산을 남기는 것도 유산을 기부한다고 말할 수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그러한 기부금에 대하여 상속세가 면제되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는 유산기부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필요성

최근 한국자선단체협의회 유산기부센터는 전국 50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사회에 유산을 기부하겠다는 비율은 응답자의 26.3%에 그쳤지만, 재산을 기부했을 때 상속세의 10%를 감면해주는 등의 상속세 감면 혜택이 있을 경우에는 51.6%가 유산을 기부할 의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유산을 기부하겠다는 비율이 낮은 이유는 유산기부에 대한 여러 편견이 존재하고, 기부 방법에 대한 정보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유산을 기부했을 때 상속세 감면 혜택 등 법적인 보완체계가 미흡하다는 데 있습니다.

유산기부는 사회 자원을 축적함으로써 사회 양극화 해소를 실현할 뿐만 아니라 정부의 재원만으로는 부족한 사회복지 영역에 민간이 보완재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꼭 필요한 기부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부 절차

1. 생전기부

「생전기부」를 하는 경우 그 기부 절차는 보통



① 피상속인인 기부자 ② 기부 약정 ③ 피상속인인 기부자가 이행 같은 방식으로 기부가 이루어집니다. 즉 약정한 사람이 그 이행도 하게 됩니다.

2. 사인증여 계약에 의한 유산기부

「유산기부」를 하는 경우에도 보통



① 피상속인인 기부자가 ② 생전에 기부 약정 ③ 상속인에 의한 기부 이행과 같은 방식으로 기부가 이루어집니다.

3. 유언에 의한 유산기부



① 피상속인인 기부자가 ② 유언장 작성 또는 유언을 하고 ③ 상속인이 그 이행을 하는 방식도 유산기부로 인정됩니다. 즉 유언에 따른 증여인 유증(遺贈)에 의한 방식이 유산기부에 해당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유언에 의하는 경우에는 민법에서 정한 「유언방식」을 충족할 때에만 유언으로 인정되는데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口授)증서에 의한 방식 등이 있습니다. (민법 제 1065조)

유언에 의하는 경우에는 상속인들의 유류분과 충돌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대체로 유산의 50% 이내에서 기부하는 경우에는 유류분이 문제되지 않지만, 부동산이나 주식 등 현물자산의 가격 변동에 따라 평가액이 달라져 해당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4. 상속인에 의한 유산기부



① 상속인이 ② 유산에 대해 기부 약정을 하고 ③ 이행을 하는 방식에 의한 증여로 볼 수 있지만, 그 목적재산이 유산이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보아야 하는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법에서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즉 사망 후 6개월 이내에 이루어지는 경우 유산기부로 인정합니다.

기부 재산의 평가

유산기부를 하는 경우 상속재산의 평가는 시가에 의함이 원칙입니다.

통상적으로 시가는 매매가를 말하지만, 상속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사망일) 전후 6개월 이내에 매매 감정 수용 경매 등이 있는 경우를 시가로 봅니다. 상속재산과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가액도 시가로 봅니다(유사 매매 사례가액). 유사 매매사례 가액으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준 시가로 산정합니다.

상속재산의 평가 방법 순위



기부가 제한되는 경우

「생전기부」를 하는 경우에도 특정한 목적 때문에 법률에 따라 기부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유산기부」 역시 제한됩니다.

이러한 제한은 농지나 주식 등에 대하여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농지는 “실제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만이 소유할 수 있다.”는 농지법의 제한에 따라 공익법인 등에 이를 기부할 수 없습니다(농지법 제6조).

주식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권이 있는 주식(=보통주)의 일정 비율 즉 대개 5% (성실공익법인은 10% 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하는 자선 법인의 경우 최대 20%) 이내의 주식에 대해서만 세제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 이상의 주식을 기부받을 수 있으나 가산세를 부과받게 되거나 아니면 초과 부분에 대하여 상속세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유산기부에 관한 편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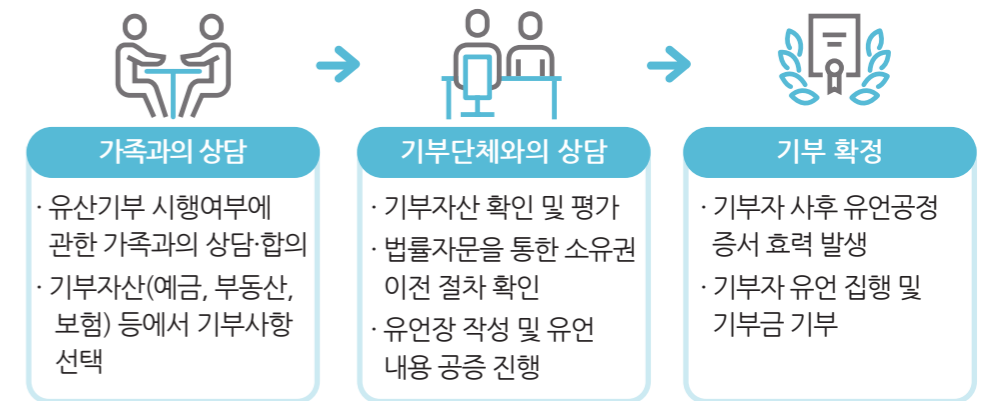
Q&A

Q 유산기부는 재산이 많은 사람만 가능한가요?

유산기부는 재산이 많은 사람만이 하는 기부가 아닙니다. 누구나 자신이 가진 재산 일부를 세상에 환원해 가장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나눔이자 사랑입니다

Q 유산기부는 절차가 복잡하지 않나요?

아닙니다. 가족분들과의 합의가 우선 제일 중요하며 그 이후의 절차는 매우 간단합니다.



Q 유산기부를 하게 되면 세금을 많이 내야 하지 않나요?

아닙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에 유증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에 따라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기부한 경우 기부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결과적으로 상속인은 상속세 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Q 가족이 있어도 내 재산을 모두 기부단체에 기부할 수 있나요?

기부자의 의사에 따라 재산을 모두 기부단체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법은 피상속인이 유언 또는 증여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를 제한함으로써 상속인을 보호하는 유류분 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산 기부를 진행할 때 미리 가족과 충분한 상의가 필요하며, 가족 구성원들의 동의하에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내가 기부한 유산은 어디 쓰이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자선단체들은 이사회 및 총회를 통한 거버넌스 관리·감독, 최소 1년 1회 이상에 걸친 사업의 효율성 평가 시행, 웹사이트에 재정, 기부금 사용내역 정보공개 등을 바탕으로 한 자선단체 운영지침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단체입니다. 따라서 기부자분들이 기부해주신 유산은 국내를 비롯한 전 세계 국가들의 어린이·노인 등 취약계층의 영양 보건, 식수와 위생, 교육, 보호 등에 사용됩니다.

유산기부 동참하는 사람들

현금기부



강혜숙, 故 김한상님



"약자의 편에 서고 싶었습니다."

강혜숙과 故 김한상 회원은 2009년부터 네팔 홀라 지역 아동과 결연을 통해 꾸준히 나눔을 실천해 온 좋은 이웃이다. 故 김한상 회원은 생전 약자의 권리를 위해 앞장서 왔으며, 아내 강혜숙 회원과 지속적인 나눔을 통해 세상의 좋은 변화를 위해 힘써 왔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난 故 김한상 회원의 가족들은 조의금을 통해 그의 따뜻한 마음을 이어가고자 차드 왈리아 지역주민들과 아동들에게 깨끗한 물을 선물해 주었다.

부동산기부



故 양애자님



"축복받은 인생을 살았으니, 이것을 위해 기부하겠습니다."

축복받은 인생을 살고 있으니 남은 재산을 이웃을 위해 기부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딸 정인숙 씨를 통하여 아파트를 기부하게 되었다. 양애자 후원자는 1993년부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매달 20~30만 원씩 정기후원을 하고 있었으며, 2000년 죽기 전 기부를 해야겠다는 뜻을 품고 서울 서초동에 있는 한 아파트를 기부하기 위해 구입했다고 하였다. 故 양애자 후원자가 후에 치매가 걸려 자녀가 직접 부동산 및 후원금을 기부하게 되었다.

부동산기부



민00님



"장애인을 위한 헌신과 봉사를 위한 씨앗"

"내가 가진 재산을 어떻게 사용해야 의미가 있을까?" 1993년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신학 박사과정을 공부하고 있었던 한 목사는 불현듯 고민에 빠졌다. 학업을 마쳐갈 때쯤 자신이 회사원으로 근무하며 한국에서 모은 돈과 퇴직금 등으로 마련한 재산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고민하게 된 것이다. 운명처럼 당시 서울대학교 교수였던 밀알복지재단 손봉호 이사장의 강연을 통하여 밀알 소식을 듣고 본인의 재산을 장애인을 위해 쓰기로 결심했다. 조용히 기부하기를 원해 실명을 밝히지 말아 달라고 부탁한 기부 천사, 민 목사는 당시 한국에 있는 어머니를 통해 서울역 앞에 있는 5층 건물의 등기권리증을 전달해줬다.

유산기부 동참하는 사람들

기타기부



조용근님



유산기부 운동이 법편을 통해 더욱 활발히 일어나길!

세무법인 석성의 조용근 회장은 과거 국세청에서 오랜 기간 일하면서 수많은 자산가를 접할 수 있었다. 그분들이 생을 마감하여 남긴 재산이 유산상속의 문제로 가족들 사이에 많은 다툼과 소송이 오가는 것을 보며 새로운 결심을 하였다고 한다. 세상이 어지럽고 힘든 때 일수록 가진 자가 자신의 것을 다른 이들을 위해 내어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래서 추후 본인 유산의 일부를 다일공동체에 기부하기로 서약(2014.07.11.)하였다. 조용근 회장은 법편나눔운동본부의 명예본부장으로서 우리 가까이 있는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일을 함께하면서 우리 시대의 모범적인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을 몸소 보여주었다.

현금기부



故 설순희님



배고프고 가난한 어린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6.25 전쟁 때 두 오빠가 납북되는 아픔을 겪은 故설순희 여사는 2006년, 기아대책을 만나 정기후원자가 되어 꾸준히 후원을 지속해 왔으며 기아대책에서 새롭게 유산기부 프로그램이 시작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꺼이 동참해 2015년 7월 20일, 故설순희 후원자님은 기아대책 유산기부 1호 후원자가 되었다. 故설순희 후원자는 "어려운 시절을 겪어왔기 때문에 가난한 이웃을 보면 늘 마음 한 켠에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남은 생을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하던 차에 유산기부 이야기를 듣고 실천하게 됐어요. 가족들이 모두 찬성하고 기쁘게 받아들여 줘서 참 감사해요" 라고 밝혔다.

현금기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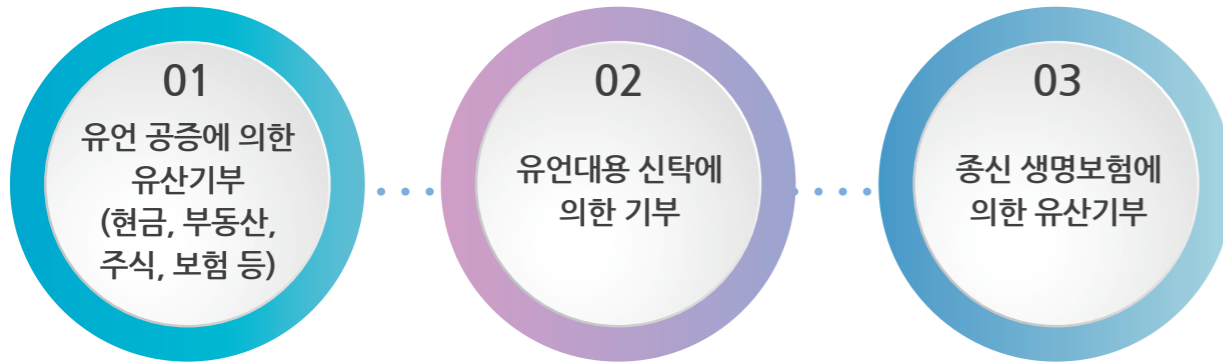
이영님



조의금으로 전 세계 아이들의 건강하고 밝은 미소를 지켜주었습니다.

평소 "물질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다만 소유하고 있는 동안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과 함께 나눌 뿐이다"라고 말하는 구연호 회원은 2006년부터 굿네이버스와 함께 전 세계 아이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일에 힘쓰고 있다. 구연호 회원은 어머님께서 소천하신 이후, 조의금을 굿네이버스에 전해주셔서 지구촌 어려운 이웃들에 대한 관심과 나눔을 실천하였다. 어머님께서 세상의 좋은 변화를 만드는 좋은 향기로 오래도록 기억되시기를 소망한다.

유산기부 3가지 방법



유언공증에 의한 유산기부 (현금, 부동산, 주식, 보험 등)

절차

유언 공증에 의한 유산기부는 기부자(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언 공증 변호사 앞에서 유언 내용을 말하고, 유언 공증 변호사가 공정증서에 기록한 뒤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입니다.



1

유산기부 취지와 뜻을 가족들과 함께 충분히 상의합니다.



2

기부하고자 하는 단체 담당자와 상담한 후 유언 공증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준비합니다.



3

증인 2명, 유언집행자를 선정하고 함께 공증인 사무실을 방문하여 유언 공증을 진행합니다.

준비사항



유언자

- 유언에 의한 증여(유증)를 하려는 자
- 기본증명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부할 재산 관련 서류, 도장, 후견 등기사항 부존재증명서 (가정법원에서 발급)



증인

- 유언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정증서 작성 시 참석해 유언 내용을 확인하는 자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 신분증, 도장, 후견 등기사항 부존재증명서 (가정법원에서 발급)



유언 집행자

-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후 유언을 집행할 권리 의무를 가진 자로, 증인과 겸직 가능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 신분증, 도장, 후견 등기사항 부존재증명서 (가정법원에서 발급)

Q&A

Q 유언방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유언은 유언자의 사망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민법이 정한 5가지의 유언 방식만 효력이 있기 때문에 아래 5가지 중 하나를 택하여 유언하여야 합니다.

민법에서 인정한 유언방식 5가지에는

- 1 공증인 앞에서 유언하기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 2 직접 손으로 쓰기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 3 비밀로 작성하기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 4 녹음하기 (녹음에 의한 유언)
- 5 다른 사람에게 유언 내용을 이야기하여 대신 받아쓰도록 하는 방식으로 유언하기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가 있습니다.

Q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알고 있는데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장 작성 시 유의해야 할 점이 있나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란 유언자가 직접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을 말하며 별다른 양식은 없지만 「민법」 제1066조 제1항에 따라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自書) 날인(捺印) 해야 합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작성 방법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장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유언장 전문(全文)을 직접 써야(自書) 합니다.

- ☑ 타인이 대필한 경우에는, 비록 유언자가 구술하였다거나 승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직접 쓴 것이 아니므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효력이 없습니다.
- ☑ 타자기나 워드 프로세서 등의 문서작성기구를 이용해서 작성된 것도 직접 쓴 것이 아니어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효력이 없습니다.

- ✔ 자기의 손으로 직접 종이의 표면 등에 문자를 적어야 하므로 복사한 것도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효력이 없습니다.
- ✔ 외국어나 속기 문자는 가능합니다.

유언장의 작성 일자

- ✔ 유언의 성립시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유언자는 유언장의 작성일자를 직접 써야 합니다.
- ✔ 유언의 성립 시기는 유언자가 유언능력 있는 상태에서 유언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시기가 되고, 여러 유언이 충돌하는 경우에 우선순위를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 ✔ 작성의 연·월·일을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주소와 성명

- ✔ 유언자의 주소를 유언장에 직접 써야 합니다. 이때 주소는 유언장의 작성지가 아니라 유언자의 주소를 말합니다.
- ✔ 주소는 반드시 「주민등록법」에 따라 등록된 곳이 아니라도 생활의 근거되는 곳이면 됩니다.
- ✔ 유언자의 주소는 반드시 유언 전문과 동일한 종이에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유언증서로서 일체성이 인정되는 이상 그 전문을 담은 봉투에 기재해도 됩니다.
- ✔ 성명은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성명에 한하지 않고, 유언자가 통상 사용하는 아호·예명·별명 등 유언자가 누구인지를 가리키는 것이면 됩니다.

유언장에 유언자의 인장 또는 도장 날인(捺印)

- ✔ 날인하는 인장 또는 도장은 자신의 것이면 되고, 행정청에 신고한 인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Q 유언 공증 증인의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공증인법에 따른 결격사유자 외에는 누구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유언대용신탁에 의한 기부

유언대용신탁의 의의

신탁이란 개인이 계약이나 유언을 통해 자신이 지정한 자(수익자)의 이익을 위해 재산을 관리, 운용, 처분, 개발하는 권한을 개인이나 신탁회사에 위탁 하는 법률 관계를 말하며, 유언대용신탁은 유언자가 금융회사와 자산신탁 계약을 맺고 자산 관리를 위탁하면서 사망 후 자산의 전부나 일부를 받게 될 수익자를 지정하는 것입니다.

생전에 자기 재산을 타인에게 신탁하여 자신을 자기 생존 중의 수익자로 하고 자신의 배우자나 자녀 등을 ‘사망 후수익자’로 함으로써 자기 사망 후의 재산 분배를 달성하려는 것으로서, 사인증여와 유사한 기능을 갖는 신탁입니다.

유언대용신탁과 유언에 의한 신탁의 구별

유언대용신탁의 경우 유언장과 달리 세대 간 연속적인 상속 설계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유언장은 최초 상속인 지정만 가능하지만, 신탁의 경우 할아버지가 자식 세대를 거쳐서 손자에게, 남편이 배우자를 거쳐 자식들에게 유산을 물려주는 연속 상속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탁도 유언에 의하여 설정할 수 있는데(신탁법 제3조 제1항 제2호), 이러한 경우에는 이를 유언에 의한 신탁이라고 합니다. 유언에 의한 신탁은 신탁 자체의 효력발생시기가 위탁자의 사망 시이기 때문에 유언대용신탁과 구별됩니다. 유언대용 신탁은 **신탁 자체의 효력은 생전에 발생하고 그 수익권을 위탁자의 사망 시에 취득하기 때문입니다.**

유언대용신탁에 의한 기부의 장·단점

이러한 유언대용신탁에 의하여도 기부를 하는 것이 가능한데, 유언대용신탁의 장점은 일반적인 유언에 비해 다양한 방법으로 신탁계약자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상속 비율과 지급 시기 설정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 회사에 부동산 등 재산을 신탁하여

- 1 생전에는 그 수익을 지급받다가
- 2 본인 사망 후에는 수익금의 25%는 공익단체에, 그 잔액의 50%는 배우자에게, 나머지 50%는 아들과 딸에게 25%씩 지급하고,
- 3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매각대금을 아들과 딸, 공익단체에 각 3분의 1씩 지급한다.」 등의 설계가 가능합니다.

유언대용신탁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유언대용신탁을 설정하는 그 시점에 별도의 세계 혜택이 없고 실제로 공익단체에 기부되는 시기에 세계 혜택이 주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유언대용신탁에 의한 유산기부 절차



① 원하는 신탁사와 상담해 유언대용신탁의 운용 여부 및 금액 등의 조건을 설정합니다.



② 일반 신탁상품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신탁 계약을 체결하고 기부 하고자 하는 단체를 사후 수익자로 지정합니다.



③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신탁 계약에 따라 자산이 기부 하고자 하는 단체에 기부됩니다.

Q&A

Q 신탁에 의한 유산기부를 진행할 시 생전에 나오는 자산의 수익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신탁에 의한 유산기부로 결정하셨을 때 생전에 자산에서 나오는 수익은 위탁자가 취하고 사후에는 위탁자의 의사에 따라 신탁회사가 기부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Q 신탁에 의한 유산기부만의 장점이 있나요?

신탁에 의한 유산기부의 경우, 유언에 의한 유산기부를 할 시에 필요한 유언장 작성 및 공증의 복잡한 상속 절차가 생략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 유언장 | 유언대용신탁 |
|----------|--|---|
| 형식 | 유언공증의 경우 증인 2인 등이 필요 | 금융기관의 계약서를 작성함 |
| 방식 |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에 의한 방식으로 제한돼 있고, 각 방식마다 증인 등 엄격한 요건이 충족돼야 함. 방식을 갖추지 않은 유언은 무효 | 고객과 은행 등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방식이 없음.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유효 |
| 수증자 지정 | 한 세대의 수증자 지정만 가능함. 즉 자녀, 손자, 제3자 등을 수증자로 지정할 수는 있으나, 수증자가 먼저 사망할 시 상속 문제까지 해결할 수 없음. 여러 세대에 걸친 부의 안정적 대물림이 어려움 | 여러 세대에 걸친 수증자 지정이 가능함. 즉 자녀, 손자 등을 수익자로 지정하고, 이들이 사망했을 경우의 수익자까지 한꺼번에 연속적으로 지정할 수 있음. 부의 안정적 대물림이 가능함 |
| 조건 및 기한 | 조건 및 기한부 유증도 가능함. 다만 조건 및 기한의 성취 시까지 상속 재산 관리가 어려움 | 고객의 다양한 상황과 요구에 맞는 조건 및 기한 설정이 가능함. 조건 및 기한 성취 시까지 은행이 상속 재산을 관리하므로 안정적인 상속 재산 보존이 가능함 |
| 내용 변경 | 유언 공증의 경우 내용 변경을 위해서는 증인 2명 필요 | 기존 계약서에 대한 변경 계약만으로 내용 변경 가능 |
| 효력 발생 범위 | 신분상 내용+재산상 내용 | 재산상 내용에 한함 |
| 유언 집행 | 피상속인 사망 후 유언서의 효력, 유언집행자 문제 등으로 상속인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음 |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은행이 계약서에 따라 신속하게 상속 재산을 집행 처리함. 피상속인의 유지를 객관적으로 집행해 분쟁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음 |
| 생전 재산 관리 | 유언서만 작성돼 있을 뿐 특별한 재산 관리는 이루어지지 않음 | 생전부터 관리 가능하고 사후에도 본인 의사대로 관리 운용이 가능함 |

■ 종신·생명보험에 의한 유산기부

종신보험 생명보험의 수익자를 기부하고자 하는 단체로 지정하여 가입하거나 이미 가입되어 있는 종신보험 생명보험의 수익자를 기부 하고자 하는 단체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보험사에 따라 수익자 변경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음

절차

-  ① 보험회사 상담사와 상담 후 가입할 보험을 선택합니다.
-  ② 기부 하고자 하는 단체 담당자와 함께 보험사를 방문해 보험의 수익자를 기부하고자 하는 단체로 변경합니다.
-  ③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종신 생명보험이 기부 하고자 하는 단체에 기부됩니다.

Q&A

Q 보험금 수익자를 기부 하고자 하는 단체로 하면 보험료에 대한 기부금 특별공제는 가능한가요?

기부자의 종신 생명보험의 경우 피보험자의 사망 이후에 실현되는 것이므로 생전에 지불하신 보험료에 대한 기부금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Q 종신 생명보험의 수익자를 기부 하고자 하는 단체 이외에 가족도 동시에 지정할 수 있나요?

피보험자의 동의를 있으면, 수익자를 2인 이상으로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현금 이외에 부동산도 기부할 수 있나요?

매매를 통해 사용 가능한 재산이라면 현금 이외에도 부동산, 보험 등의 재산도 모두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재산들은 유언 공증 등 여러 방법으로 기부하실 수 있기 때문에 무엇을 기부하실지와 어떤 방법으로 기부하실지에 대해 정한 뒤 기부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Q 유산기부가 현행법에 의해 제한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대표적으로 농지나 주식 등은 법률에 따라 기부가 제한됩니다. 농지는 “실제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만이 소유할 수 있다.”는 농지법의 제한에 따라 공익법인 등에 이를 기부할 수 없습니다. (농지법 제6조)

주식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권이 있는 주식(=보통주)의 일정 비율 즉 대개 5%(성실공익법인은 10% 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하는 자선 법인의 경우 최대 20%) 이내의 주식에 대해서만 세제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 이상의 주식을 기부받을 수 있으나 가산세를 부과받게 되거나 아니면 초과 부분에 대하여 상속세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Q 내가 기부한 유산은 어떤 사업에 쓰이나요?

저희 한국 자선단체협의회 내 단체들은 이사회 및 총회를 통한 거버넌스 관리 감독, 최소 1년 1회 이상에 걸친 사업의 효율성 평가 시행, 웹사이트에 재정, 기부금 사용내역 정보공개 등을 바탕으로 한 자선단체 운영지침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단체입니다. 따라서 기부자분들이 기부해주신 유산은 국내를 비롯한 전 세계 국가들의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의 영양 보건, 식수와 위생, 교육, 보호 등에 사용됩니다.

Q 보험금 수익자를 기부 하고자 하는 단체로 하면 보험료에 대한 기부금 특별공제는 가능한가요?

기부자의 종신·생명보험의 경우 피보험자의 사망 이후에 실현되는 것이므로 생전에 지불하신 보험료에 대한 기부금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Q 유산기부를 할 때 가족이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피상속인이 유증을 통해 공익법인에 유산을 기부할 때 및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기부한 경우 기부된 재산은 상속세 과세표준 가액에 포함되지 않음으로 상속인은 결과적으로 상속세 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공익법인에 기부 시 세금 부과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공익법인에 기부하시면 공익법인에 대한 증여세는 비과세입니다. 또한 유산 기부 시에도 기부자산은 상속세 과세표준 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기부의 경우에는 공익법인으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시 취득세가 부과되며, 이후 공익법인이 이를 매각할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상속받은 재산을 유산 기부하려고 하는데 상속등기가 꼭 필요한가요?

상속재산은 상속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상속인에게 소유권 이전하는 상속 등기를 한 후에 공익법인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Q 유산기부를 할 때 가족이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피상속인이 유증을 통해 공익법인에 유산을 기부할 때 및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공익 법인에 기부한 경우 기부된 재산은 상속세 과세 표준가액에 포함되지 않음으로 상속인은 결과적으로 상속세 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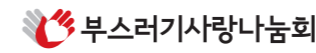


 **굿네이버스**

굿네이버스는 1991년 한국에서 설립된 대한민국 토종 NGO입니다. 1992년 방글라데시를 시작으로 구호개발사업을 확장해 나가며 지역개발사업에 매진해 온 결과, 굿네이버스는 창립 5년만인 1996년 UN경제사회이사회로부터 NGO 최상위 지위인 포괄적협약지위를 획득하여 글로벌 NGO로서의 위상과 지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2007년에는 UN과 국제노사정기구연합이 주관한 MDGs Award에서 '보편적 초등 교육 달성'에 기여한 사업성과를 인정받아 MDGs Award를 수상했습니다. 2011년에는 국내 NGO 최초로 유엔세계식량계획(WFP)의 공식 파트너 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UN 기구와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국제사회에서 민간외교의 역할을 주도해나가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NGO로서 좋은 변화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기아대책**

기아대책은 유엔경제사회이사회(UN ECOSOC) 특별협약지위 단체로, 1989년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설립된 국내 최초로 해외를 돕는 국제구호단체입니다. 기아대책은 굶주림을 겪는 모든 아이들과 가정, 공동체가 회복되어 또 다른 공동체를 돕는 것을 목표로 해외, 국내, 북한에서 다양한 사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부스러기사랑나눔회**

부스러기사랑나눔회는 “빈곤환경의 모든 아동이 삶의 주체로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동권리를 보장한다”는 미션을 가지고 1986년 12월 9일 1,000원의 작은 나눔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지금까지 32년간 빈곤환경에 놓인 아이들과 그 가정을 위해 아동중심, 현장중심, 후원자중심의 원칙 아래 다양한 나눔의 실천에 앞장서왔습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1948년 이후 절대빈곤과 혼란의 시기에 빈곤아동과 6.25 전쟁고아 지원사업을 시작으로 대한민국 아동복지의 역사를 써왔습니다. 70년이 넘는 지난 역사 속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국내 대표아동옹호기관으로 성장했으며 기부 문화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각계각층의 단체 및 시민들과 함께 사업을 이어가며, 모금전문가육성, 사회적관심을 유도하는 홍보·마케팅 강화, 보편적 아동 행복을 위한 권리 옹호 캠페인 전개, 후원자 서비스 강화 등으로 어린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나가고 있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및 참여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인종, 종교, 정치적 이념을 초월하여 29개 회원국이 전 세계 약 120개 국가에서 활동하는 국제 구호개발 NGO입니다. 1919년 영국에서 설립된 세이브더칠드런은 2019년 아동구호개발 NGO중 처음으로 10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창립자 에글렌타인 쟈이 1923년에 작성한 아동권리 선언문은 유엔 아동권리협약(1989년 채택)의 모태가 되는 등 세이브더칠드런의 100년 역사는 곧 아동권리의 역사입니다. 유엔경제사회이사회로부터 포괄적 협의지위(제1범주의 지위)를 인정받은 세이브더칠드런은 100년간 쌓은 노하우와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활동합니다. 국내에서는 즉각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아동을 지원하는 한편, 아동의 삶이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바꾸는 활동, 아동권리 침해 즉각 대응, 그리고 우리 사회가 가진 아동에 대한 편견을 바꾸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00년간 쌓아온 전문성을 기반으로 인도적위기 대응 시 교육 지원을 총괄하고 있으며, 비유엔기구로 긴급구호 지원 분야를 총괄하고 있는 단체는 세이브더칠드런이 유일합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재정 운영과 관련한 모든 법률 규정을 준수하고, 외부감사 기관을 통해 감사를 받고 있으며, 관련하여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한국가이드스타로부터 3년 연속 만점과 크라운 인증을 받았습니다.

DAIL 다일공동체

다일공동체는 31년전 한 그릇의 밥을 청량리역 광장에 쓰러진 할아버지 한분에게 대접하며 시작된 밥퍼나눔운동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현재 서울에서 밥퍼나눔운동본부를 통해 소외된 이웃을 섬기고 있으며, 개신교 첫 무료병원인 다일천사병원을 세워 무의탁노인과 노숙자, 외국인 노동자들을 무료로 수술, 치료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1년 서울시 수탁기관으로 선정되어 임종을 앞둔 환자들을 간호 및 치료할 수 있는 다일작은천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밀알 복지재단

밀알복지재단은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1993년 설립되어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을 목표로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와 인간다운 삶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정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생애주기별 국내전문복지사업과 지속 가능한 국제 개발협력사업을 수행합니다. 'UN경제사회이사회'로부터 특별 협의적지위를 부여 받아 종교, 국적, 인종, 정치적 이념을 초월하여 활동합니다.

더불어 함께
하트-하트재단

하트-하트재단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정신을 바탕으로 가난과 장애 그리고 질병으로 소외된 국내외의 아동과 그 가족을 섬김으로써 그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더불어 함께하는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 1988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설립 이후 하트-하트재단은 국내에서는 장애 등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들에게 오케스트라 활동 등을 통한 체계적 음악 교육과 다양한 문화 활동을 지원하는 문화 복지사업과, 시각장애 아동들에게 포괄적인 교육서비스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복지사업을, 장애인 인식 개선 사업과 함께 전개해 왔습니다. 특히, 2006년에 창단된 하트하트오케스트라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발달장애인 오케스트라로 성장하였으며 문화복지의 롤모델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hilat 홀트아동복지회

홀트아동복지회는 한국전쟁 직후인 1955년, 전쟁과 가난으로 부모를 잃은 아동에게 새로운 가정을 찾아주는 입양사업을 통해 설립되었으며, 보건복지부 제47호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 16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입니다. 설립자 해리 홀트 씨는 고통 속에 있는 아이들을 위한 특별한 부름에 응하여 한국 고아 8명을 입양한 것을 시작으로 우리나라의 입양사업과 장애인 복지사업을 위해 부인 버다 여사와 함께 모든 재산을 바쳤으며, 아이들이 지낼 곳을 마련하기 위해 직접 산을 개간하고 밭을 일궈주었습니다. 오늘날 홀트아동복지회는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 준 해리 홀트 씨의 정신을 이어받아 입양 사업은 물론 아동, 청소년, 미혼한부모, 장애인, 저소득계층, 다문화가정 등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 전문기관으로 자리잡았습니다. 또한 2017년 4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UN ECOSOC)로부터 특별 협의지위(Special consultative status)를 획득하였습니다.

국제구호개발NGO
GOOD PEOPLE 굿피플

1999년 2월 설립된 국제구호개발 NGO 굿피플은 가난과 질병, 재난 등의 극심한 생존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지구촌 소외 이웃들의 현실을 알리고, 국경을 초월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도움의 손길을 전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문명과 정부기관의 보호로부터 소외된 지역을 중심으로 아동보호, 교육, 질병예방 및 치료, 긴급구호, 지역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굿피플은 지구촌 소외 이웃들을 돕기 위해 구호,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유엔경제사회이사회 특별협의지위 NGO입니다.

OXFAM 옥스팜

옥스팜은 1942년 영국 옥스퍼드에서 시작된 세계적인 국제구호개발기구로, 지난 77년간 전 세계 94개국에서 식수 문제 해결이나 식량 원조와 같은 인도주의적 구호활동에 있어 가장 실용적이고 혁신적인 방법을 사용해 왔습니다. 특히, 현지 정부 또는 영향력 있는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가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정책 입안 등에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동방사회복지회

동방사회복지회는 1972년 사회의 한편에서 소외되고 고통 받는 아이들과 이웃들을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지난 50여년간 동안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도움과 보다 나은 삶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사회복지기관으로써 영유아복지, 아동복지, 한부모가족복지,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지역복지, 국제개발협력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까이에는 아직도 부모가 키울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어린 생명, 선천적인 장애로 힘겨워하는 장애인, 가난 때문에 학업을 포기하려는 청소년, 혼자 외롭게 살아가는 노인에 이르기까지 누군가의 따스한 손길이 필요한 이웃들이 있습니다. 동방사회복지회는 많은 분들의 변함없는 지지와 후원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있는 현장에서 '생명존중의 가치실현'의 미션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Compassion 한국컴패션
공유 받은 어린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1993년까지 한국의 어린이들을 도운 컴패션은 경제 수준이 높아진 한국보다 더 어려운 나라들을 돕기 위해 한국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2003년, 컴패션은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한국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컴패션은 전세계 가난한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들을 결연하여 자립 가능한 성인이 될 때까지 전인적(지적, 사회 정서적, 신체적, 영적)으로 양육하며, 현재 25개국 180만명 이상의 어린이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아 영아 생존 후원 프로그램과 재난 구호, 교육 지원, 의료 지원, 취약 어린이 지원, 에이즈 예방 및 퇴직 사업 중심으로 후원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SMW 대한사회복지회

대한사회복지회는 1954년 전쟁고아들을 위한 복지를 시작으로 사업의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지금까지 인간 존엄성에 대한 확고한 신념, 생명에 대한 끝 없는 사랑으로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 사업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한사회복지회는 가정보호를 핵심가치로 일시보호, 양육, 의료, 교육, 장학사업 등 요보호 아동을 위한 전방위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이 든든한 사회적 보호를 받고 아동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돕습니다. 대한사회복지회는 아동을 비롯해, 미혼한부모, 장애인 및 지역사회를 위한 복지를 통해 소외 이웃의 행복과 권리 향상에 힘쓰고 있습니다. 현재, 본부 및 전국 5개 지부와 20개 시설, 1개 부속병원을 운영합니다.

GLOBAL CARE
글로벌케어 Medical NGO

글로벌케어는 의료인 및 전문인들로 구성된 국제개발 보건의료NGO로서 가난하고 병든 이웃에게 의료와 복지의 손길을 전합니다. 글로벌케어는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의 병들고 소외된 이웃을 직접 찾아가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글로벌케어는 1980년대부터 국내외 의료봉사활동을 하던 의료인들이 중심이 되어 가난과 질병, 재난 등으로 고통 받는 소외된 이웃들을 돕고자 1997년 2월 창립되었습니다. 현재 인도적 지원의 경험과 의료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구촌 이웃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하고자 국제개발의 무대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전 세계 10개 국가에서 보건 의료에서 나아가 식수 위생, 모자보건, 아동교육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후원자님들과 함께 발맞춰 성장해온 글로벌케어는 앞으로도 정직하고 투명하게 국제개발 보건의료 NGO로서 지구촌 곳곳의 소외된 이웃들이 희망을 꿈꿀 수 있도록 활동하겠습니다.

SAFE KIDS KOREA

Safe Kids(세이프키즈)는 1988년 미국 국립 어린이 병원이 창립한 세계 유일의 국제 아동 안전 기구이며, 세계 각국에서 어린이 안전에 힘쓰고 있습니다. Safe Kids Korea(세이프키즈코리아)는 Safe Kids(세이프키즈)의 한국 법인으로서, 2001년에 설립되어(공동대표 : 박상용, 박희중, 이영구, 황의호) 어린이 사고 관련 Date의 질적 향상 및 사고예방 교육자료 개발뿐만 아니라 실제 교육장에서 어린이 안전교육 및 각종 교육 캠페인 활동 등을 통해 어린이 안전증진에 선두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유산기부 가이드라인

컨텐츠 자문

이상신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오종원 (상속·증여 조세전문가)

인 쇄 2019년 12월 9일

발 행 2019년 12월 9일

발행처 한국자선단체협의회

발행인 이일하

주 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159 부귀빌딩4층
한국자선단체협의회 유산기부센터

연락처 한국자선단체협의회

TEL (02) 735-0067~9 FAX (02) 735-0065

한국자선단체협의회 유산기부센터

TEL 1811-6411



한국자선단체협의회

굿네이버스 · 기아대책 · 부스러기사랑나눔회 · 초록우산어린이재단 · 세이브더칠드런
다일공동체 · 밀알복지재단 · 하트-하트재단 · 홀트아동복지회 · NGO 굿피플 · 옥스팜코리아
동방사회복지회 · 한국컴패션 · 대한사회복지회 · 글로벌케어 · 세이프키즈코리아

한국자선단체협의회

03165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159 (교북동, 부귀빌딩) 4층

문의 : 전화 02-735-0067~9 | 이메일 : npokorea@npokorea.kr